

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자립 계획 감독 안내서

- 해당 회원에게 '자립 계획'을 작성하라고 권유한다.
- 필요한 경우, 상호부조회 및 장로 정원회 지도자에게 부탁하여 그 회원이 자립 계획을 작성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한다.
- 회원이 계획을 완성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지,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유형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. *지침서 제1권: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(2010), 5.2를 참조한다.*

회원 정보

회원 이름

회원의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한다

스스로의 노력이나 친척을 포함한 가족 및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도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회원의 경우, 교회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. 아래 표를 활용하여 회원에게 제공된 지원 내역을 모두 기록한다.

날짜	지원 유형 (해당될 경우)	액수 또는 기간
7월 28일	예) 식료품	예) 2주간

참고: 특수한 상황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(예를 들어, 어떤 회원이 여러분에게 자신은 현재 거주 중인 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말할 경우), 복지 전화 상담 서비스(1-855-537-4357,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) 또는 해당 관리 본부로 연락한다.

